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4.

발 의 자 : 정태호 · 이광재 · 맹성규
김의겸 · 진성준 · 김남준
김태년 · 부승찬 · 이재강
이학영 · 김주영 · 이수진
박홍배 · 고민정 · 김남희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,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·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.

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·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큼. 그럼에도 현행 「형법」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명예훼손·모욕 관련 규정만으로는 사후(死後)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하·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, 「형법」상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.

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

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되,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이나 연구·토론, 언론보도 및 조롱·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.

또한 위반 정보가 유포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자,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취급 거부·정지·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전 의견제출 및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.

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,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·제34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제3호의2 신설).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독립유공자 모욕 정보 등의 삭제요청 등) ① 누구든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독립유공자의 공적 또는 인격적 가치를 조롱·희화화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그 사회적 평가 또는 역사적 존중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당한 비판 또는 의견표명
2.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·토론
3. 언론보도 및 시사평론
4. 예술적 표현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할 목적이 아닌 경우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

·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”라 한다)에게 그 취급의 거부·정지·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정보의 게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,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,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·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⑥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·제한·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

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.

1.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

2.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

⑦ 제1항을 위반하는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, 이의신청
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의3(자율규제 등)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
독립유공자 모욕 정보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 기준 마련
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4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요청을 이행하
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독립유공자를 모욕하는 정보의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
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게시된 정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4조의2(독립유공자 모욕 정보 등의 삭제요청 등) ① 누구든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독립유공자의 공적 또는 인격적 가치를 조롱·희화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그 사회적 평가 또는 역사적 존중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1.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당한 비판 또는 의견표명</u> <u>2.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·토론</u> <u>3. 언론보도 및 시사평론</u> <u>4. 예술적 표현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</u>

서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
희화화할 목적이 아닌 경우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을
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
등에 게시된 사실을 발견한 때
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
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
홈페이지를 관리·운영하는
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
청하거나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
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
률」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
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
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”
라 한다)에게 그 취급의 거부
· 정지· 제한을 요청할 수 있
다.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
따른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
정보의 게시자에게 의견제출의
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긴
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중대
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

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,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,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·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⑥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·제한·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한 사람

<신 설> 제44조(과태료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 4. (생 략)	에게 알려야 한다. 1.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2.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⑦ 제1항을 위반하는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,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34조의3(자율규제 등)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독립유공자 모욕 정보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. 제4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. (현행과 같음)
--	--